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0. . .	
연월일	(제 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 변경과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회의 중 정기회의는 제외(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시회의는 유지하고 정기회의는 제외

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

됨에 따라 상임이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으로 변경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임명권을 여성가족부장관에 게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으로 변경 및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고시로 정함(안 제8조제1항 개정)

○ 긴급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고시로 정함으로써 정책의 탄력적 대응

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의 범위 설정(안 제10조의2 신설)

-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로 하며, 제4항 중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를 “한부모가족으로서”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폐업정보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5.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6.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12.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13. 자동차관리법에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
 14. 건설기계관리법에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원부
-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은 <u>여성가족부장관</u>이 임명한다.	<u>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⑤ ~ ⑦ 좌동 제6조(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직과 운영) ① ----- ----- -----<u>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장</u> -----.
--	---

② 이행관리원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 ---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행관리원을 대표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 ⑤ (좌동)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행관리원에 상담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상담에 필요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1.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u>한부모가족으로서</u>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10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u>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폐업정보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5.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6.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12.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13. 자동차관리법에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

14. 건설기계관리법에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원부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 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연 락 처	(02) 2100-6354